

수 신 : 대표이사
 경 유 : 인사노무부서장
 일 자 : 2025. 03. 07
 제 목 : 2025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당사는 고용노동부 위탁운영기관으로 정부지원정책사업 관련 예산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2025년도에 출산률 제고와 모성보호,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적 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 지원정책(인재채움뱅크)이 아래와 같이 대폭 확대되어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인수인계기간 2개월 포함)	육아휴직지원금 (12개월↓ 아동 대상 특례 적용)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2025년 지원금 확대/부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 (2025년 최대 사용기간 확대)
600만원 / 5개월	870만원 / 1년	1,440만원 / 1년	480만원 / 1년
□ 사업주(기업)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최대 3,930 만원 지원			

4. 귀 기관에서 출산·육아지원정책(인재채움뱅크)의 활용하여 기업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당사에서는 무상으로 기업상담과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아울러 당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채용 관련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자료를 <붙임>의 자료로 첨부하오니 상담신청 등 협조 요청드립니다.

- 붙임 : 1. 고용센터 협조 공문(인재채움뱅크). 1부.
 2. 정부지원사업 상담신청서. 1부.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문. 1부. 끝.

주식회사 지에스씨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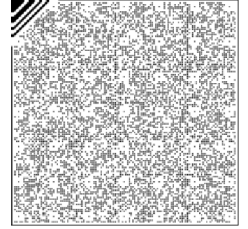


담당 김 정 국 이사 김 범 석
 시 행 GSCNET20250307-1 (2025. 03. 07) 접 수 ()
 우 48499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401호~403호 / <http://www.gscnet.co.kr>
 전 화 (044)1811-9558 / 전 송 (044)864-1491 / 이메일 gonjok@gscnet.co.kr / 공개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수신 관내 공공기관 및 사업장 대표 귀하
(경유)

제목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협조 요청

1. 귀 기관(사업장)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출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업무공백이 예상되는 자리에 **맞춤인재를 적시에 추천**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재채움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	제공서비스	연락처
인재채움뱅크 [(주)지에스씨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인력 구인·구직자 발굴 및 등록 ■ 적합 인력 취업알선 ■ 미채용 기업 맞춤 컨설팅 	T. 1811-9558 E. gonjok@gscnet.co.kr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센터 [대전,공주,논산,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인력 구인·구직자 발굴 및 홍보 ■ 대체인력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120만원 지원 	대전 T.042-480-6021 공주 T.041-851-8507 논산 T.041-731-8661 세종 T.044-861-8992
근로복지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T. 1588-0075

※ 위탁 운영기관 : (주)지에스씨넷

3. 아울러, 현장의 대체인력 활용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인재채움뱅크 담당자의 전화 또는 방문 조사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주무관 **이태희** 팀장 **이진경** 과장 **최판선** 전결 2025. 1. 9.

협조자

시행 취업지원총괄과-101 (2025. 1. 9.) 접수

우 35262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56 (탄방동 659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 <http://www.moel.go.kr/daejeon/>

전화번호 042-480-3952 팩스번호 0508-8230-0657 / lth486@korea.kr / 비공개(5,6)

2025년 출산육아기 정부 무상 지원

- 근로자가 출산·육아휴직을 진행하면, 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별개로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 ① 대체인력 지원금(년 최대 1,440만원), ② 육아휴직(년 최대 870만원),
 - ③ 육아기근로시간단축(년 최대 480만원) 지원금으로 나뉘어 신청 가능합니다.
- 효율적인 모성보호제도 활용으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에스씨넷에서 무료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 또는 작성하여 주시면 상담/안내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예 [] 아니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 이메일, 생년월일
수집 및 이용 목적	정부 무상 기업지원 사업 안내 및 컨설팅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미참여 시 1년, 사업 참여 시 5년

*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거부 시, 기업에 이익이 되는 정부지원사업 안내 및 컨설팅이 불가능합니다.

◆ 담당자 정보

1. 성명(직함)	2. 연 락 처
3. 이 메 일	4. 기 업 명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문 항	예	아니오
1. 회사 내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예정자 포함)가 있으십니까?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기업지원금)을 신청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2-1. (예) 담당자 또는 신청방법의 변경 등의 어려움으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십니까?		
2-2. (아니오) 신청기간이 모호하고, 신청방법이 난해하여 지원 시기 알람서비스 같은 지원/관리가 필요하십니까?		
3. 타 정부지원사업(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니어인턴십 등),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4. 출산육아기 지원 등 정부의 기업지원금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 “예” 체크하실 경우, 담당자 정보란에 기입된 담당자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 2025년 출산육아기 사용 현황

○휴직자 내역

NO	이름	직무	출산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	지원금 신청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지원금 신청
예시	김정국	총무	25. 1. 1 ~ 25. 3. 30	25. 3. 31 ~ 26. 3. 30	○	26. 3. 31 ~ 26. 6. 30	X
1							
2							
3							
4							
5							
6							
7							
8							
9							
10							

○채용자 내역(채용자는 휴직자의 대체 여부와 관련 없이 모두 기재하여 주세요)

NO	이름	직무	생년월일(성별)	채용(예정)일	일도약참여여부	일반채용
예시	이주은	간호	980403 - 2	2025. 3. 17	X	○
1						
2						
3						
4						
5						
6						
7						
8						
9						
10						

※ 휴직자 및 채용자 내역이 많은 경우, 별도로 메일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2025 출산 육아 지원

『 사업주 지원금(근로자 1인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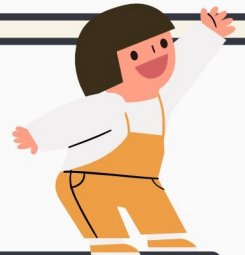


최대 3,930만원

인재채움뱅크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산재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공백에 대비하여 미리 대체인력 구직자 POOL을 구성, 구인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요청 시 **맞춤 인재**를 추천

사업주 지원



- 1 전담컨설턴트 구인 요건 1:1 상담
- 2 인재채움뱅크, 워크넷 **무료** 공고 등록
- 3 **맞춤 인재** 추천
- 4 **지원금 안내** (출산육아기, 인재채용 등)

지에스씨넷에서 무료상담받고 기업 지원금 혜택 챙기자!



인수인계
24.11.01 - 24.12.31
(최대 2개월)
최대 240만원

출산휴가
25.01.01 - 25.03.31
(단태아 90일)
최대 360만원

육아휴직
25.04.01 - 26.09.30
(최대 1년 6개월)
최대 2,850만원

육아기단축
26.10.01 - 27.09.30
(1년/육아휴직 미사용시 최대 3년)
최대 480만원

→ **총 3,93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단축지원금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 (대체인력 채용기간 지원)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 (최대 1년 6개월 지원)	30일 이상 육아기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 (육아휴직 미 사용 시, 최대 3년 지원)
1인당 월 120만원 (년 최대 1,440만원)	1인당 월 30만원 (년 최대 870만원)	1인당 월 30만원 (년 최대 480만원)
* 인수인계 최대 2개월 인정 * 사업주 부담 월 임금의 80% 한도 내 * 고용조정 금지 (채용일 전 3개월~고용 후 1년)	* 만 12개월 이내 자녀 3개월 연속 사용 시, 첫 3개월간 월 200만원 * 남성 육아휴직 첫 번째 ~ 세번째 허용 사례, 월 10만원 추가 지원	* 기업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첫 번째 ~ 세 번째 허용 사례 월 10만원 추가

Q. 추가 사업주 지원 내용이 있습니까?

- 지에스씨넷에서 고용노동부 & 보건복지부 기업 지원사업 참여 및 **무료 컨설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니어인턴십	미래내일 일경험
만 34세 이하 청년 채용 시, 기업 인건비 지원 및 근로자 지원	만 60세 이상 근로자 9개월 이상 채용 시, 6개월간 인건비 지원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 제공,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1년)	시니어 1인당 최대 270만원 + α	기업 지원 + 참여자 수당 지원 *참여 유형별 상이

도전하는 청년에게 480만원 약진하는 기업에게 720만원

지원유형

구분	1유형	2유형
지원업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
지원대상청년	**취업애로청년	모든 청년
사업주 지원	720만원 (6개월 이상 고용 시 최장 1년)	720만원 (6개월 이상 고용 시 최장 1년)
청년 지원	-	480만원 (18, 24개월 근속 시 각 24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외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취업애로청년 : 만 15~34세,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등 해당 청년

***빈일자리업종 : 제조업외 빈일자리 업종(누리집 및 운영기관 문의)

참여절차



공 통

1) 기업 참여조건

- ① 업력 1년 이상 기업 : 기준 피보험자수 × 1,900만원 해당 금액보다 매출액이 많은 경우 참여 가능
(23, 24년 중 1개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 기준)
- ② 업력 1년 미만 기업 : 매출액 요건 없음

2) 청년 근로조건

-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정규직채용 및 계약직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② 고용보험 가입 및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인 자
- ③ 최저임금 이상

3) 지원금 지급

- ① 채용일 기준(6, 9, 12)개월이 종료된 월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
- ②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상실코드 23, 26-3) 이직이 없어야 함**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

4) 지원 한도 : 참여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수도권), 100%(비수도권)까지 지원

1유형 지원대상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해당 시 지원 가능)

- ① 지식서비스산업 ② 문화콘텐츠산업 ③ 신·재생에너지산업 ④ 청년 창업기업 등

****취업애로청년** (1가지 이상 해당 시 신청 가능)

- ①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②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③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④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미래내일일경험·일학습병행 사업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⑥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⑦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⑧ 북한이탈청년 ⑨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⑩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2유형 지원대상

*****5인이상 빈일자리 업종**

- ①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대분류가 'C.제조업'** 기업
- ②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요건을 충족한 기업
- ③ 참여대상은 만 15세~34세의 청년으로 취업애로유형과 무관

신청방법

- 고용24 <https://www.work24.go.kr> >> 기업회원 (가입) /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운영기관 **(주)지에스씨넷 선택** >> 사업참여신청
- ※ 기채용자 기업은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기업 신청

